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79회 임시회 (2025. 10. 23.)

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건 설 위 원 회

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권 하 나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5-113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5년 10월 13일(월)
- 라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4일(화)

2. 제출사유

유망한 중소기업의 창업지원 및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창업보육센터인 마포비즈니스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며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1) 추진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5조(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(운영의 위탁)

2) 추진 필요성

- 마포비즈니스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,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있어 사무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됨
- 적정 규모 이상의 조직·인력 및 창업기업 관리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 도모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: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

- 1) 입주기업의 모집·선발·관리
- 2) 입주기업의 경영·기술·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- 3) 입주·졸업 기업간 교류 지원
- 4) 산·학·연 협력을 통한 입주기업 지원
- 5) 센터 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1) 센터 명: 마포비즈니스센터
- 2) 시설유형: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(BI)
- 3) 소재지: 마포구 매봉산로 18, 마포창업복지관 4~6층 (상암동)
- 4) 시설규모: 2,773.09㎡ (약 838평), 창업보육실 20개실



마. 위탁기간: 2026. 1. 1. ~ 2027. 12. 31.(2년)

바. 수탁기관 선정방식: 재위탁(재계약)

- 선정주체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(별도 구성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 (2026년)

1) 소요예산: 150,000천원(구비 100%)

2) 산출내역 (단위: 천원, %)

구 분	산 출 내 역	소요예산액(비율)
총 계		150,000(100%)
인 건 비	○ 운영인력 3명(센터장 1, 사무국장 1, 매니저 1)	98,000(65%)
입주기업지원비	○ 멘토링, 창업프로그램, 사업화지원금 등	24,200(16%)
센터운영비	○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홍보비 등	27,800(19%)

아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위탁할 수 있음
- 2) 창업기업 보육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운영이 기업의 기술 개발,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있어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됨

자. 민간위탁 추진일정 ※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
- 1) 2025. 10월: 구의회 동의
- 2) 2025. 10월: 수탁기관 재위탁(재계약) 추진계획 수립
- 3) 2025. 11월: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
- 4) 2025. 11월: 민간위탁 협약 체결
- 5) 2026. 1월~: 민간위탁 사무 운영 개시

4. 검토의견

가. 동의안 개요

-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「마포비즈니스센터」의 운영·관리 사무를,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2년간 재위탁(재계약)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나. 검토 내용

(1) 운영 현황

- 「마포비즈니스센터」는 2007년 12월 개소하여, 시설형 민간위탁(예산지원형) 방식으로 운영 중임. 이는 마포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, 위탁기관의 명의로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임.
- 현 위탁기관은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,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(BI)로서 전문인력(센터장, 매니저 등)을 배치하고 창업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-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(20개실, 최대 3년)을 제공하며, 창업컨설팅, 마케팅 지원,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.

「마포비즈니스 센터」 개요

- 운영목적: 마포구와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홍익대학교의 인적자원과 산학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및 성공률 제고를 통하여 마포구 내의 예비창업 및 초기 첨단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
- 개소일 : 2007.12.21
- 지정일 : 2008.12.24
- 관련 규정 :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11조의 2,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
- 주소 :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18, 4층~ 6층
- 건물규모 : 창업보육실 20실 (연면적 : 2418.5㎡, 보육실 면적:1174.6㎡)
- 지원시설 : 제품전시실, 제품촬영실, 회의실, 휴게실 등
- 보육기업 : 20개 기업 입주
- 입주기간 : 기본 2년(평가 후 1년 연장-1회가능/최대3년)

(2) 민간위탁 필요성

- 창업보육센터는 기술·경영지원, 멘토링, 네트워크 구축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BI(Business Incubator) 시설로, 행정조직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전문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.
- 따라서 민간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창업지원의 품질과 지속성을 확보하고,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.

(3) 성과평가 결과

- 2025년도 성과평가 결과, **총점 83.27점(‘우수’)**으로 평가됨.(붙임1 참고)
 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1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으며, 평가점수 80점 이상으로 재위탁 요건(성과평가 70점 이상)을 충분히 충족함.

- 평가 결과, 창업보육 전문 매니저 배치,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운영 성과가 우수하였으며,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대부분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.
- 다만, 입주기업의 투자·수출 실적 등 사업화 성과 관리 부문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됨.

다. 종합의견

- 마포비즈니스센터는 지역 창업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서,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운영은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.
- 또한, 성과평가 결과 ‘우수’ 등급을 획득하였고,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 또한 모두 충족하였음.
- 종합적으로 볼 때, 본 동의안은 성과평가 결과와 운영 실적, 제도적 요건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됨.
- 다만, 향후 운영 시에는 성과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입주기업의 사업화 성과(매출·투자·수출 등) 관리체계 강화, 산·학·연 협력 프로그램의 실질적 확대, 시설 안전관리 및 종사자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 등 지속적인 개선·보완 노력이 필요함.

- 2025년 마포비즈니스센터 -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

I

추진 근거

□ 「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1조(성과평가)

제21조(성과평가)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II

평가 개요

□ 평가대상: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

○ 센터현황

구 분	내 용
센 터 명	마포비즈니스센터
시설유형	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(BI)
소 재 지	마포구 매봉산로 18, 마포창업복지관 4~6층(상암동)
위탁기관	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
위탁기간	2024. 1. 1.~2025. 12. 31.(2년)

○ 평가범위: 2024. 1. 1.~2025. 8. 31.

○ 평가일자: 2025. 9. 16.(화)

○ 평가내용: ① 성과분야(80점), ② 안전관리 분야(20점)

※ 성과분야 중소기업부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결과 반영

○ 점수판정 기준

등 급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점 수	90점 이상	80~89점	70~79점	60~69점	60점 미만

Ⅲ 평 가 결 과

□ 평가결과: 83.27점(우수)

○ 총 평

- ▶ (잘된 점) 창업보육 전문매니저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창업 관련 전문인력 풀을 구축하여 입주기업 성장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.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입주기업을 위한 설명회 등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충실히 활용함. 아울러, 2024~2025년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모두 적극 조치하였으며 적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의지가 높음.
- ▶ (보완할 점) 성과분야에서 입주기업 투자액 및 수출액 점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, 향후 사업을 추진 시 개선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. 안전분야에 있어 종사자의 교육을 추가 이수하여 안전관리 의식을 키울 필요가 있음.

○ 평가점수: 83.27점

- 성과분야(80): 71.60점 ※ 창업보육센터 경영평가 결과 89.50점(환산 71.60점)
- 안전관리(20): 11.67점

○ 평가등급: 우수

등 급	매우 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 미흡
점 수	90점 이상	80~89점	70~79점	60~69점	60점 미만

《 재위탁·재계약 민간위탁 추진절차: 구의회 동의 (P47) 》

구 분	재위탁(공개모집)	재위탁(수의협약)	재계약
① 재위탁·재계약 추진계획 수립	민간위탁 지속필요성(시행사무 적정성 심의), 공개경쟁 가능성, 수탁가능업체, 재계약 가능 여부 등 사전 조사 위탁사무 내용, 기간, 비용, 수탁자 선정방법 등 결정		
↓	↓		
② 구 의 회 동 의	구의회 동의 ▶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→ 의회 동의 받은 이후 6년 경과 마다 의회 동의 필요 ▶ 조례 §6① 의회 동의안 제출 ▶ 1년 단위 이하의 반복적 자치사무 → 구의회 동의 배제		
↓	↓		
③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	-	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▶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▶ 수의협약 근거사유 심의	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▶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 ▶ 성과평가 결과 심의 ▶ 시정요구 결과 반영 ▶ 재계약 적정성 심의
↓	↓		
④ 수탁기관 선 정	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▶ 수탁기관 적격자 선정	-	
↓	↓		
⑤ 재위탁·재계약 협약체결	재위탁·재계약 협약 체결 (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 일시 연장)		
↓	↓		
⑥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	위탁사무와 시설 인계인수, 사무편람 작성과 비치 등		
↓	↓		
⑦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등	▶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지도·점검(감독), 감사: 필요 시 ※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에 한해 매년 2회(반기별 1회) 이상 ▶ 성과평가: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 ▶ 재위탁·재계약: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 선정 ▶ 재계약: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결과와 성과평가 결과 반영		